

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0. 30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확인서, 의료관련법령의 위임사무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무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(수수료수입)의 증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징수 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추가함.
(안제1조)
- 나.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(증명)중 12호 다음에 12-1. 입찰참가신청란을 신설
 - 입찰참가신청서 - 1 건 10,000원(신설)
- 다.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(증명)중 16호 다음에 17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란 신설
 -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- 1필지(년도별) 300원(신설)
 -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기재발급 - 1필지(년도별) 300원(신설)

라.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) 중
제2호 보건사회관계의 수수료액을 조정

○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(명칭, 구조이전) 변경신고	1건	10,000원(개정)
○ 치과 기공소 인정	1건	20,000원(신설)
○ 안경업소 개설등록	1건	15,000원(신설)
○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) 개설신고	1건	20,000원(신설)
○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	1건	20,000원(신설)
○ 의료기관신고필증 재교부	1건	2,000원(신설)
○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 (부속의료기관포함)	1건	10,000원(신설)

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"을 "수리, 등록, 지정, 확인 및 입찰참가 신청 등"으로 한다.

제5조중 "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"를 "발급신청서, 신고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"로 한다.

[별표 1]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(증명)중 제12호 다음에 제12-1호 입찰참가신청을, 제16호 다음에 제17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, 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중 2.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, 기타 신고, 신청,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 (이하 "제증명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 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</p>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본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증명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1. 보건사회관계</td> </tr> <tr> <td>○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의 신고사항변경신고</td> <td>1건</td> <td></td> <td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	본	기준	수수료액	비고	(증명)					<신설>					<신설>					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					1. 보건사회관계					○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의 신고사항변경신고	1건		1,000원		<p>제1조(목적) 수리, 등록, 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 등</p> <p>제5조(징수방법) 발급신청서, 신고서, 또는 입찰참가신청서</p>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본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증명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12-1. 입찰참가신청</td> </tr> <tr> <td>○ 입찰참가신청서</td> <td>1건</td> <td></td> <td>1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17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</td> </tr> <tr> <td>○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</td> <td>1필지</td> <td></td> <td>300원</td> <td>년도별</td> </tr> <tr> <td>○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기재발급</td> <td>1필지</td> <td></td> <td>300원</td> <td>년도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1. 보건복지관계</td> </tr> <tr> <td>○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(명칭, 구조이전)변경신고</td> <td>1건</td> <td></td> <td>1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	본	기준	수수료액	비고	(증명)					12-1. 입찰참가신청					○ 입찰참가신청서	1건		10,000원		17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		○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	1필지		300원	년도별	○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기재발급	1필지		300원	년도별	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					1. 보건복지관계					○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(명칭, 구조이전)변경신고	1건		10,000원	
구	본	기준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증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보건사회관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의 신고사항변경신고	1건	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	본	기준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증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-1. 입찰참가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입찰참가신청서	1건	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7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	1필지		300원	년도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기재발급	1필지		300원	년도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보건복지관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(명칭, 구조이전)변경신고	1건	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
○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	1건	1,0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약국재개업신고	1건	1,0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습관성 의약품 원료의도승인신청	1건	500원		○ 마약구입서 용지 교부신청			
○ 이·미용사 신고 필증 재교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이·미용 영업소의 명칭등의 변경신고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공중목욕탕 명칭 변경 신고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공중목욕탕 영업 허가증 재교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유흥직업 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시설묘지,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묘지 개장허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시체운반업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 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	1건	3,000원		<현행과 같음>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
○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	1건	1,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○유기장 영업허가 증 재교부	1건	500원		<현행과 같음>			
<신설>				○치과기공소 인정	1건	20,000원	
<신설>				○안경업소개설등록	1건	15,000원	
<신설>				○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)개설신고	1건	20,000원	
<신설>				○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	1건	20,000원	
<신설>				○의료기관신고필증 재교부	1건	2,000원	
<신설>				○의료기관개설허가 사항변경허가(부속의료기관포함)	1건	10,000원	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8조(수수료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

-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31조(사용료등의 부과·징수,이의신청)

-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.

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(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)

-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별지 제4호의7 서식에 의한다.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관계 법령 발췌서

□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(의료기사·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) 제1항 제5호

5.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·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·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.

□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)제3항

-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□ 의료법 제30조(개설) 제3항
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·치과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체 서

□ 의료법 제31조(의료기관의 개설특례) 제1항

-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·종업원 기타 구성원(수용자를 포함한다)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□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2(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)

- ①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.

□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(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)

- ①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.